

| | |
|-------------|--|
| 사업개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2026 만화·웹툰분야 창업기업 육성지원(초기기업) ○ 사업목적 : 웹툰 벤처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시장 진입 유도 ○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30. |
| 지원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창업 만 1년 이상 3년 미만의 만화·웹툰 분야 창업 기업(개인/법인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3년 미만인 창업 기업 - 2023. 3. 25.(당일 포함) ~ 2026. 3. 24.(당일 포함)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iminfo.mms.go.kr)'에서 확인가능(협약시 확인서 제출) ※ 신청 창업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컨소시엄 구성 불가) ※ 기업 대표자 및 임원의 콘텐츠 분야 생애 최초 창업기업 ※ 콘텐츠 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양식3) 지원요건 확인 ○ 지원분야 : 만화·웹툰 분야 콘텐츠/서비스를 보유 중이며 고도화하려는 창업 기업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지원분야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웹툰 콘텐츠 창·제작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문분야 개척형태 ◎ 만화·웹툰 콘텐츠와 플랫폼의 결합 형태나 IP 기반 유통산업 ◎ 만화·웹툰 콘텐츠와 기술의 결합 형태(빅데이터, AR/VR, AI, 미디어아트 등) ◎ 만화·웹툰 콘텐츠와 콘텐츠간 결합(웹툰 IP를 활용한 2차 콘텐츠의 사업화(방영, 상영, 출판 등))이나 산업간 융합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예비기업' 분야 공고문 확인 후 신청 ○ 지원규모 : 5개 과제 내외, 각 1억 원 이내 ※ 선정결과에 따라 과제 수는 조정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현물 불인정) * 총 사업비(A) = 국고지원금(B) + 사업자부담금(C), (사업자 부담금 비율=C/A*100) - 사업종료 후 연장평가를 통과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 가능(매년 사업 신청 필수)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콘텐츠 제작비 및 사업화 시드 지원 ※ 본 사업은 만화·웹툰 분야의 콘텐츠/서비스를 제작하려는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콘텐츠/서비스 제작 및 고도화(제작을 위한 인건비 편성 가능), 창업 기업 운영 컨설팅(법률, 세무 등), 현지화, 유통, 홍보·마케팅, 투자 유치 등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중심으로 지원 |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3. 25.(수) ~ 2026. 4. 9.(목), 17:00까지
- 접수기간 : **2026. 3. 25.(수) ~ 2026. 4. 9.(목), 17:00까지**
 -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 접수가 지연되거나 첨부파일 업로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공모명 : **2026 만화·웹툰분야 창업기업 육성지원**
- 제출서류 목록 : **초기_신청기업명.zip (최대 50MB 이내)**
 - ※ **목록에 있는 서류를 하나의 zip 파일로 묶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MAC OS(운영체제) 사용할 경우, 업로드 및 다운로드 과정에서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01~11) | 제출 형식 | 비고 |
|----|------------------------|---------|------------------------------|
| 필수 | 01. 사업신청서 | 한글(Hwp) | |
| | | PDF | |
| 필수 | 02.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 엑셀(xls) | |
| 필수 | 03.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PDF | |
| 필수 | 04.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엑셀(xls) | |
| 필수 | 0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PDF | 자필 서명 필수 *4번 참여 인력 전부 |
| 필수 | 06. 사업자등록증 사본 | PDF | 기업 소재 지역, 사업개시일 확인 |
| 필수 | 07. 법인등기부 등본 | PDF | 법인 사업자 필수 |
| 필수 | 08. 중소기업확인서 | PDF | |
| 선택 | 09. 회사 소개서 | PDF | 자유양식 |
| 선택 | 10.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 PDF | 자유양식 |
| 선택 | 11.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서 | PDF | 자유양식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안내

| 구분 | <1단계> 서면평가 | <2단계> 발표평가 | 사업비 종합심의 | 협약체결 |
|-------|--|---|--------------------------|-------------------------------------|
| 평가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신청서 서류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 점수 고득점순 예산 범위 내 선정 | 심의 결과 반영 및 협약 진행 (후 순위 별도 선정) |
| 선정 규모 | 지원 규모 2배수 이내 | 후 순위 포함 1.5배수 이내 | 협약 대상 확정 | |
| 가중치 | 40% | 60% | 100% | |

①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를 부여합니다.(고득점순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 접수 결과가 지원 규모의 2배수 이내면 서면/발표 통합평가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음

② 발표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종합심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③ 종합심의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결과(40%) + 발표평가결과(60%)

- 단계별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협약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조건에 부합(종합점수 70점 이상)해도 고득점 기업이 많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발표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발표평가 평가지표 중 배점이 높은 평가지표의 점수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단, 협약 포기, 협약 해제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과제의 신청서와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여 예산 내역 보완 및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합니다.

④ 선정결과 발표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e나라도움에 게시

⑤ 협약체결 : 평가위원의 사업수행 개선안(세부 예산 조정 등)을 적용한 수행계획서 수정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정과정 중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최종 선정 이후라도 협약 해약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

- 서면평가

| 구분지표 | 세부지표 | 내용 | 배점 |
|----------------|-----------|--------------------------------------|------------|
| 수행기관 (20점) | 관리 체계성 | 조직 구성, 관리 안정성·체계성 | 20 |
| | 기관 전문성·실적 | 유사 과제 수행 경험, 조직 역량 | |
| 참여인력 (20점) | 인력 구성 | 적정 인력(정규·비정규·용역) 구성 및 배치 | 20 |
| | 참여율 | 인력별 참여율 및 참여 기간 적정성 | |
| 사업비 (20점) | 사업비 규모 | 사업비(국고·자부담) 규모 적정성 | 20 |
| | 편성 내역 | 세목별 산출 근거 및 적합성·합리성 | |
| 과제기획력 (40점) | 사업 이해도 | 사업 목적과 과제의 부합성 | 40 |
| | 독창성 | 기획의 차별성·창의성·신선도 | |
| | 경쟁력 | 비교 우위 요소(IP, 기술, 파트너십 등) 보유 및 활용 가능성 | |
| 합 계 | | | 100 |

- 발표평가

| 구분지표 | 세부지표 | 내용 | 배점 |
|----------------|-----------|---|------------|
| 수행기관 (20점) | 추진 의지 | 과제책임자의 수행 의지·충실도 | 20 |
| | 기관 전문성·실적 | 유사 과제 수행 경험, 조직 역량 | |
| 과제기획력 (40점) | 작품성 및 완성도 | 기획의 완성도·예술성·일관성 | 40 |
| | 대중성 | 대중 공감 가능성, 파급력·수용성 | |
| | 달성 가능성 | 달성 목표·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 |
| 기대성과 (37점) | 성과 목표 | 성과 목표의 구체성, 측정 및 달성 가능성 | 37 |
| | IP 확장성 | 보유 IP(제작 결과물 포함)의 지속성 및 확장성 | |
| | 시장성 | 예상 수요 및 매출·수출 규모 | |
| ESG (3점) | 일자리 창출1) | 일자리 창출 계획 제시 여부 (고용형태, 수행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인원 수 등) ※ 제출 1점, 미제출 혹은 제출 내용 미흡 0점 | 3 |
| | 지역균형 | 지역기업 참여 여부(주관기관 본사 기준) : 1점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1점 | |
| | 표준계약 실적2) |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제출 ※ 제출 1점, 미제출 0점 | |
| 합 계 | | | 100 |

1) 신규 일자리 창출결과는 결과평가와 연동되며, 계획대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결과평가시 감점될 수 있음

2)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서 제출 기관은 결과평가시 실적확인 및 결과평가 반영 예정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 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총 국고지원금의 7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국고지원금의 3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및 사업비 관리

○ 사업추진 일정(예정)

| 번호 | 구분 | 내용 |
|----|-----------------------|--|
| 1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교육 (5월) | ○ 선정 과제 대상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 후 과제수행교육 진행 |
| 2 | 중간점검 (8월) | ○ 예산집행 및 과제수행 적정성 점검 후, 통과 기관 대상 2차 지원금 지급 ○ 중간실적보고서(향후 사업진행에 대한 세부수행계획 제시 포함) 및 집행내역(자부담 선집행 여부 등 포함), 수행계획서 상 중간산출물 등 제출/점검 |
| 3 | 결과보고서 접수 (12월) | ○ 결과보고서는 협약종료 후 15일 이내 접수 |
| 4 | 결과평가 (12월) | ○ 결과보고서, 산출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 여부 판단 |
| 5 | 회계검토 및 정산 (12월~차년 1월) | ○ 진흥원 지정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예산집행 내용 검토 및 협약기간 종료 후 회계검토 및 정산 실시 |

※ 총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후부터 집행가능(협약체결 전 집행분 소급 적용 불가)

지원요건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 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7. 신청 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이 콘텐츠 분야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8. 사업자등록증 개시일 기준 3년이 초과된 기업 (개시일 2023. 3. 25.(당일포함) 이전기업)
- ※ 1년 미만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지원

| | |
|----------------|---|
| 문의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문의 : 만화웹툰산업팀 채연우 주임(☎061-900-6435, cywoo314@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동영상 자료(접속 URL) |
| 콘텐츠금융제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용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용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참고] 2026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 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 서류 및 평가 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div> ○ 콘텐츠금융제도(투자·용자 유치 지원)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p>※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p> |
| 안내사항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타 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훼손하는 경우, 이면계약 체결 등 불공정 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이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은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지원사업 수행자는 근거 법령 및 상위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함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등 행위는 수행기관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 간주하므로, 수행기관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e나라도움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 (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 |

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실적은 표준계약서로 증빙하며, 채용 계획 및 실적 증빙 변경은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해야 함
-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